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이 지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임(2008년 7월초 시행 예정임)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I 추진경과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2008. 5. 22)
-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2008. 5. 28)
 -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2008. 5. 28~6. 17)
 - 2008. 7. 1 국무회의 심의·의결(7월초 시행예정)

II 주요내용

- (중전) 300㎡이상 일반음식점 : 구이용 쇠고기
- (현행)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쌀(밥류)를 대상으로 6. 22부터 시행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 22부터 시행
- (개정)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1. 대상업소 및 시행시기

구분	2008. 7월초	2008. 12. 22.부터
대상 품목 및 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100㎡ 상(집단급식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을 사용한 음식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배추김치 - 100㎡ 상(집단급식소 제외)

- 쇠고기(가공품포함),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

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병행표시
 - ※ 쇠고기(7월 초순), 돼지고기 및 닭고기(12. 22)

○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 쌀(7월초), 배추김치(12. 22)

○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 집단급식소 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 내부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표시 시행
- 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급식 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표시 시행
-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 등 실시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CJ푸드 등)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대상음식점 수 : 2007. 9월말 현재〉

-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수는 약 643천개소임
 - 일반음식점 583천개소, 휴게음식점 29, 집단급식소 31(위탁급식영업 7 포함)
 - 그중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만 취급하는 업소는 약 228천개소임

2. 대상품목

- 쇠고기는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하여 조리한 모든 음식이 대상
 - ※ (현행)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 (개정) 국, 반찬, 쇠고기 식육 가공제품(햄버거패티류, 미트볼 등)을 조리·판매하는 경우까지도 표시대상으로 확대하고 세부 품목을 구체화
- 돼지고기, 닭고기는 식육 및 포장육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 ※ 현행 (2008. 12. 22 발효예정)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 개정 (2008. 12. 22 발효예정)용도 및 세부품목을 구체화
- 쌀은 쌀(찜쌀 포함) 또는 곡류를 혼합하

+ 정책

여 조리하여 밥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떡류, 죽류, 면류, 식혜는 제외

- 김치는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가 대상

<축산물 원산지등의 표시대상 조리음식의 종류 (시행령 안)>

1. 쇠고기(예시)

- 생략

2. 돼지고기

- 생략

3. 닭고기

유형	유형별 음식의 종류
구이용	통구이류, 불고기류, 양념구이류(닭갈비, 닭꼬치, 닭발, 닭날개, 닭가슴, 닭모래집 등), 바비큐류, 스테이크류(안심 스테이크, 닭가슴스테이크 등), 볶음류(닭볶음, 닭발, 모래집볶음, 야채볶음 등), 로스구이류, 훈제류, 샌드위치류(닭고기샌드위치, 치킨샌드위치 등), 버거류(닭고기버거, 치킨버거, 야채버거 등)
탕용	탕류(삼계탕, 곰탕, 초계탕, 매운탕 등), 백숙류, 닭개장류
찜용	찜닭류, 닭갈비찜류
튀김용	후라이드치킨류, 양념치킨류, 튀김류, 닭강정류, 치킨돈까스류, 라조기류, 간pong기류

4. 원산지표시 방법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쌀·배추김치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팟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나. 다만,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공개(가정통신문, 인터넷, 취사장 비치 등)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다.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일괄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닭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찜쌀 포함)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이라 한다)으로,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섞였을 경우 그 섞인 사실을 표시하며,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으로 표시

나.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예시 :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

- 예시 : 국내산 쌀과 중국산 쌀 섞음

3) 김치류(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으로 표시

나. 수입산 배추(절인배추 포함)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주원료인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표시

• 예시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한 경우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

• 예시 :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

• 예시 :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4)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며,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쇠고기

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젓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과 쇠고기의 종류를 함께 표시.

• 예시 :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 예시 :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②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

• 예시 : 소갈비(미국산)

③ 원산지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

• 예시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④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국가명을 표시. 다만,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육우), 햄버거(쇠고기 : 수입산)

나. 돼지고기·닭고기

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

• 예시 :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 예시 : 삼겹살 국내산(돼지 일본산)

②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예시 :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③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

• 예시 :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5) 기타 공통사항

가. 다른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등을 표시

• 예시 : 함박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 나. 조리에 사용된 축산물·쌀·배추 등이 국내산인 경우 그 농산물을 생산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음
- 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원산지등의 국가별 비율을 표시할 수 있음

5. 식육의 종류 표시

- 국내산 쇠고기는 원산지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표시
 - 이는, 국내산 육우나 젓소가 한우로 둔갑되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6. 단속절차 및 방법

- 원산지 표시단속은 정기단속과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부정유통신고를 접수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수시 단속을 실시
- 사회적인 검증방법
 - 단속현장에서는 우선 원산지표시 여부와 방법이 적정한가를 확인한 다음, 조리하고 남은 원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
 - 원산지표시 내용이 의심나는 경우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적조사
- 과학적인 검정방법
 - DNA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쇠고기, 쌀)과 미량원소를 이용한 기기분석 등 과학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

- * 과학적인 식별법 개발 : 87개 품목(쌀, 쇠고기 유전자분석 포함)
- 분석결과 수입산으로 판정되는 업소는 납품업체까지 추적조사

7.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

- 원산지단속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 600명을 1,00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 * 특별단속 투입인력 : 농관원,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 4,800명
 - * 상시단속 투입인력 : 농관원 기동단속반과 명예감시원 500명으로 상시단속반을 편성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25천명의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
-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로 단속하고
- 100㎡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동안은 행정지도 및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
- 검역 및 통관정보 활용으로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정보 시스템 공유하여 통관되기 전에 수입정보를 파악하여 추적체계를 구축하고 검

역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해당 지원 및 출장소에 전파

* 전산시스템의 구축(2008. 7월 중순)을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전산시스템 구축 전에는 E-mail 등을 통하여 정보 공유)

- 관세청 통관정보(EDI시스템)를 실시간으로 단속원

8. 영업자 준비 사항

○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하시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증빙서류

○ 만약,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없을 경우 단속공무원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료공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여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게 됨

○ 음식점 영업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서 구입한 경우 원료공급자가 처벌을 받고 음식점 영업자는 책임이 없음

(원산지가 기재된 증빙 자료)

9. 위반시 처벌

○ 쌀·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 부과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별 세부 내역〉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①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500만원
②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300만원
③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100만원
④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만원
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333천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병과될수 있음

〈행정처분 세부 내역〉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①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②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시정 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③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중 어느 하나 미표시	시정 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④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시정 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0. 원산지 시민감시단 구성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원산지 식별능력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정예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원산지감시

단(112개반, 224명)을 「음식점원산지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운영

- 원산지표시제에 열의가 있는 명예감시원(3,000명)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개연성이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
-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아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
 - 신고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 인터넷 신고 : <http://www.naqs.go.kr>
- 신고 포상금은 단속공무원이 신고사실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11. 교육 및 홍보

- 지역별 간담회 및 음식점 영업자 교육 실시(6.22~7.31)
 - 시·도, 시·군단위 간담회 150회, 음식점 영업자 소집교육 250회(지자체, 농관원 추진)
- 리플렛 등 인쇄 홍보물 제작 배포(6.30까지)
 - 전단지 10만매, 포스터 100만부를 제작하여 관련단체, 음식점에 배포
- TV·라디오 음식점 원산지표시 캠페인 제작 광고
 - 2008.6.22~7.31 동안 TV 지하철, 전광판 등 방송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농식품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agros),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참고자료>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법 비교

구분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대상품목 및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이용 쇠고기(2007. 1. 1부터) • 쌀(2008.6.22), 돼지·닭고기·김치류(2008. 12. 22부터) (법 제1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가공품 포함), 쌀 (공포일) •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2008. 12. 22부터) (법 제15조의2)
대상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영업장면적 100㎡이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돼지·닭고기: 위 업소 모두 대상 - 쌀·김치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영업장면적 100㎡이 상)
위반자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표시: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음 (허위표시 영업정지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표시: 동일함(법 제35조) • 미표시: 동일함(법 제38조) •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법 제18조의3)